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74
----------	-----

2020. 3. 24.(화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자 : 최경천 의원 등 6인

나. 발의일자 : 2020년 3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3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3월 12일

-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## 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최경천 의원)

### 가. 제안사유

-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,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기존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던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별도 설치 · 운영하도록 위원회의 구성 ·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6조 ~ 제6조의6)
- 도 지방 공기업 및 출자 · 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, 도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위탁을 권장하도록 규정함. (안 제7조)
-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마련을 규정함. (안 제8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이강근 수석전문위원)

#### 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‘충청북도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(2019. 10.)’ 결과를 토대로, 충청북도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설치 · 운영,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시설관리 등 위탁, 노인일자리 생산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및 판로 확보 조치 마련 등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,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6조부터 제6조의6까지는 ‘충청북도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’의 설치 · 구성 ·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.
  - 현행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기능은 기존 ‘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’에서 대행해 왔으나,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 위원회 구성 · 운영이 필요하다는 도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것임.
  - 고령자비율 및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증가로 노인일자리의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별도 위원회 구성 · 운영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됨.

- 안 제7조제2항은, 지방공기업 및 출자·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할 경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위탁을 권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8조제3항은,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마련을 도지사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임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안 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    론    요    지 : “생략”

6. 심    사    결    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참고

##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실적 현황 (2018.12.)

### ○ 충북 노인일자리 참여자(공공부문)

(단위 : 명, 백만원)

구 분	계	공익활동				
		행복지키미			지역형 9개월	사회서비스형
		노노케어 9개월	노노케어 12개월	소계		
일자리수	26,088	2,147	3,455	5,602	14,274	739
사업 비	69,799	5,518	11,747	17,265	36,684	5,828

구 분	취업형		기 타 (전담인력 인센티브)	道 자체사업
	시장형	인 력 파견형		
일자리수	1,831	1,431		2,211
사업 비	4,211	215	3,760	1,835

### ○ 충북 노인일자리 참여자(민간부문)

(단위 : 명)

시군	일자리 창출 실적(목표)				4년간 ( '14~' 17) 실적
	'14년 실적	'15년 실적	'16년 실적	'17년 실적	
합계	2,004	2,035	2,080	2,420	8,539

### 노인 취업실적(2018)

'18년 목표	합 계			1) 시니어인턴십 연계		2) 시니어인턴십 미연계	
	업체수	취업 노인수	목표 달성을	업체수	취업 노인수	업체수	취업 노인수
2,000	669	2,056	102.8%	41	105	628	1,951

1) 시니어인턴십 지원대상에 해당되어, 보건복지부의 급여지원 등을 받고 취업한 실적

2) 시니어인턴십 지원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형태의 취업실적(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취업지원센터 실적자료)

#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최경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7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3월 4일  
발의자 : 최경천, 박상돈, 박형용,  
심기보, 육미선, 이상욱

### 1. 제안이유

-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별도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,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존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던 노인일자리창출지원 위원회를 별도 설치·운영하도록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6조 ~ 제6조의6)
- 나. 도 지방 공기업 및 출자·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, 도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위탁을 권장하도록 규정함. (안 제7조)
- 다.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마련을 규정함. (안 제8조)

### 3. 의안전문 : 불임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불임
- 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- 17호
- 다. 협의 :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
- 라. 비용추계 : 첨부제외 사유서 불임

## 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#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근로능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” 를 “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도지사” 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, “근로능력” 을 “노동의욕과 능력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시행계획 수립 등)” 을 “(추진계획 수립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창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“사업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행계획” 을 “추진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행계획에” 를 각각 “추진계획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시행계획” 을 “추진계획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설치 · 운영)” 을 “(노인일자리 창출지원위원회 설치 ·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보급하기” 를 “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”로, “설치 · 운영하되 그 기능은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 한다” 를 “둔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한다” 를 “자문 · 심의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창출 시행계획” 을 “사업 추진계획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도 노인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

2.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장

3.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

4. 노인복지·일자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5.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6조의3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의4(위원회의 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6조의5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.

제6조의6(위원의 수당 등)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「지방 공기업법」에 따라 도가 설립한” 을

“공공기관, 민간기관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및” 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 공기업 및 출자·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제8조의 제목 “(생산품 우선구매)” 를 “(생산품 우선구매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예산지원)” 을 “(행정·재정지원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·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근로능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-----</u>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략)  <u>3. “노인일자리 수행기관” 이란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.  1. · 2. (현행과 같음)  <u>&lt;삭 제&gt;</u></p>
<p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<u>도지사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연구·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----- ----- --- 노동의욕과 능력----- -----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<p>제5조(<u>시행계획 수립 등</u>) ①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<u>창출 시행계획</u>(이하 “<u>시행계획</u>”이라 한다) 을 매년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시행계획</u>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③ 도지사는 매년 <u>시행계획</u>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<u>시행계획</u>에 반영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도지사는 <u>시행계획</u> 수립을 위하여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<u>추진계획 수립 등</u>) ① ----- ----- 사업 <u>추진계획</u>(이하 “<u>추진계획</u>”이라 한다)----- -----.</p> <p>② <u>추진계획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추진계획</u>에----- ----- <u>추진계획</u>에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<u>추진계획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<u>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설치·운영</u>) ① 도지사는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보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(이하 “<u>위원회</u>”라 한다)를 <u>설치·운영</u>하되 그 기능은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 한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노인일자리 <u>창출 시행계획</u>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2. ~ 5. (생략)</p>	<p>제6조(<u>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설치·기능</u>) ① -----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----- ----- ----- 둔다.</p> <p>② ----- ----- 자문·심의한다.</p> <p>1. ----- 사업 <u>추진계획</u> ----- 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6조의2(위원회의 구성 등)</u></p> <p><u>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<u>③ 도 노인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</u></li> <li><u>2.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장</u></li> <li><u>3.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장</u></li> <li><u>4. 노인복지 · 일자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li> <li><u>5.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li> </ol> <p><u>④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u>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6조의3(위원장의 직무)</u></p> <p><u>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</u></p>

	<u>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<u>제6조의4(위원회의 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</u> <u>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</u> <u>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<u>제6조의5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<u>제6조의6(위원의 수당 등)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
<u>제7조(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)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과 「지방 공기업법」에 따라 도가 설립한 출자·출연기관이 노</u>	<u>제7조(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) ① ----- 공공기관, 민간기관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및 -----</u>

<p>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.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 공기업 및 출자·출연기관이 시설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8조(<u>생산품 우선구매</u>) ① · ②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8조(<u>생산품 우선구매 등</u>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9조(<u>예산지원</u>) ① · ②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9조(<u>행정·재정지원</u>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·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노인복지법

제23조의2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· 운영 등)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 ·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(이하 “노인일자리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.

1. 노인인력개발기관: 노인일자리개발 · 보급사업, 조사사업, 교육 · 홍보 및 협력사업, 프로그램인증 · 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
  2. 노인일자리지원기관: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 · 지원, 창업 · 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·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
  3. 노인취업알선기관: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 ·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·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· 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의3(생산품 우선구매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9. 1. 15.]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제1호

### ○ 첨부제외 사유

- 이 조례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인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설치 · 운영(안 제6조~제6조의6) 및 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(안 제7조), 생산품 우선구매(안 제8조) 등은 권고형식의 조항이며 지원 규모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